



#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(육계관련)

## 축산물 유통개선 사업

### ① 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

#### I. 사업개요

##### 1. 목적

- 위생적인 도축·가공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
- 부분육·냉장육·브랜드육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
- 안정적인 원료확보체계 구축 및 판매망 확보를 통한 운영활성화
- 국내 축산관련업체 경쟁력 제고 및 축산물 안정적 공급

##### 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  -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
  - LPC 등 위생적인 시설을 운용하는 도축장의 점유율 상승 유도
  - 축산물가공장에 대한 HACCP 적용 확대

성과지표	2008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5	2006	2007		
○ LPC 도축 점유율(%)	24	19	20	22(P)	익년 1월	도축실적 보고자료 참고
○ LPC HACCP 적용 가공장 (개소)	350	197	280	300(P)	당해연도 12월	전국 HACCP지정 작업장 수

##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(P)
합계	189,504	188,717	160,930	171,247	220,028
용자	175,666	178,238	153,020	157,941	195,791
자부담	13,838	10,479	7,910	13,306	24,237

☆ 뒷장에 표 이어짐.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(P)
시설자금 (소관부서)	총 계	46,126	34,929	26,360	44,347	80,787
	- 용자(70%)	32,288	24,450	18,450	31,041	56,550
	- 자부담(30%)	13,838	10,479	7,910	13,306	24,237
(축산물 위생과)	○도축장 시설현대화	5,740	10,000	5,715	5,715	14,286
	- 용자(70%)	4,018	7,000	4,000	4,000	10,000
	- 자부담(30%)	1,722	3,000	1,715	1,715	4,286
(축산물 위생과)	☞ 축장 시설보완	2,500	3,500	3,500	3,082	3,500
	- 용자(70%)	1,750	2,450	2,450	2,157	2,450
	- 자부담(30%)	750	1,050	1,050	925	1,050
(축산물 위생과)	☞ 산물 가공업체 시설	21,780	10,714.5	8,572	8,084	27,229
	- 용자(70%)	15,246	7,500	6,000	5,658	19,060
	- 자부담(30%)	6,534	3,214.5	2,572	2,426	8,169
(축산 경영과)	○계란가공장·집하장 및 등급시설	-	10,714.5	6,858	6,466	7,200
	- 용자(70%)	-	7,500	4,800	4,526	5,040
	- 자부담(30%)	-	3,214.5	2,058	1,940	2,160
(축산 경영과)	○유제품 개발·생산시설	15,106	-	1,715	21,000	28,572
	- 용자(70%)	10,574	-	1,200	14,700	20,000
	- 자부담(30%)	4,532	-	515	6,300	8,572
	○리도 축장 시설보완	1,000	-	-	-	-
	- 용자(70%)	700	-	-	-	-
- 자부담(30%)	300	-	-	-	-	
운영자금 (소관부서)	총 계	143,378	153,788	134,570	126,900	139,241
	- 용자(100%)	143,378	153,788	134,570	126,900	139,241
(축산물 위생과)	☞ 축장 운영자금	57,832	63,707	63,750	60,116	63,750
	- 용자(100%)	57,832	63,707	63,750	60,116	63,750
(축산물 위생과)	○오리도축·가공장 운영자금	1,891	1,891	1,670	1,575	1,600
	- 용자(100%)	1,891	1,891	1,670	1,575	1,600
(축산물 위생과)	○축산물가공업체 운 영자금	37,590	50,000	40,000	37,720	45,000
	- 용자(100%)	37,590	50,000	40,000	37,720	45,000
(축산 경영과)	○계란등급시설 운영 자금	3,150	3,150	2,550	2,405	2,450
	- 용자(100%)	3,150	3,150	2,550	2,405	2,450
(축산 경영과)	유업체 경영안정자금	35,040	35,040	26,600	25,084	26,441
	- 용자(100%)	35,040	35,040	26,600	25,084	26,441
	○한우고기 유통브랜 드 경영체	7,875	-	-	-	-
- 용자(100%)	7,875	-	-	-	-	

※ 주1) "오리도축장 시설보완사업"은 2006년부터 "도축장 시설보완사업"으로 통합  
 ※ 주2) "계란관련 시설지원사업"은 2006년부터 "축산물가공업체 시설지원사업"에서 분리

※ 주3) "유제품 개발·생산시설 지원사업"은 2006년도 사업이 없음.

※ 주4) "한우고기 유통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 지원사업"은 2006년 이후 사업 폐지

## II.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가. 도축장 시설보완

#### 1. 사업대상자

○ 기존 도축장(소·돼지·닭·오리) 영업자 등

#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닭 도축장

- 20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, 상위(30%)·중위(33%)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

○ 오리 도축장

- 2007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 이상(1,500천수/년 이상)인 도축장 영업자

#### 3. 지원대상

○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

- 도축장 영업자가 가공장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가공시설도 일괄지원 가능

○ 도축·오폐수처리를 위한 환경시설(혈분제조시설 등)

#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소·돼지·닭 도축장

- HACCP 관련시설 개보수비용

- 오·폐수 처리시설의 보안을 위한 개보수비용

- 전자경매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(도매시장 및 공판장)

○ 오리 도축장

- HACCP 운영 도축장중 도축·가공을 위한 시설과 오·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의 개보수비용

○ 공통사항 :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

#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○ 촉발기금(용자) 70%, 자부담 30%

○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

#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액 결정

### 나. 축산물가공업체 시설

#### 1. 사업대상자

○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

## + 정책 II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기존업체
  -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시설 등의 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자
- 신규업체
  - 도축장 부지내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자
  - 식육가공업 영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자

### 3. 지원대상

- 기존업체 : 건물 개보수비, 가공·저장시설, 운송장비 등
- 신규업체 :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기존업체
  - 위생적인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·저장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, 운송·장비 등 소요비용
  - ※ HACCP 적용 또는 계획(계약서 사본 첨부 등)중인 업체에 우선 지원
- 신규업체
  - 고품질·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제품 생산을 위한 건물, 가공·저장·운송 시설 및 장비 등 시설물 설치비
- 공통사항 :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 제외

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(용자) 70%, 자부담 30%
-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

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영업장 운영현황, HACCP 적용 또는 계획여부 등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액 결정

## 다. 도축장 운영자금

### 1. 사업대상자

- 소·돼지·닭 도축장 영업자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닭 도축장
  - 20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, 상위·중위 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

### 3. 지원대상

- 소·돼지·닭 도축장 제반 운영비용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축산물종합처리장(LPC)
  - 건설자금 부채상환, HACCP 운용비용 및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
- 축산물도매시장(공판장) 및 일반도축장
  -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
- 공통사항
  - 당해연도 동일업체(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)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

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(용자) 100%, 연리 0~3%, 1년거치 일시상환
-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상위등급 업체는 0%, 중위등급 업체는 3% 금리 지원
- ※ LPC내 육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(임차)하는 육가공업체 및 LPC주체와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생산·구매·판매 등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는 도축장 HACCP 운영수준 평가와 관계없이 LPC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3% 금리 지원

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정부지원 LPC : 50억원 이내
- 일반도축장, 축산물도매시장(공판장) : 20억원 이내
- 공통 해당사항
  - 지원대상업체 도축능력의 합(소 또는 돼지 기준)이 전년도 전국 도축물량(소 또는 돼지기준)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제한하여 운영자금 지원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
## 라. 오리도축장·가공장 운영자금

### 1. 사업대상자

- 오리 도축장 영업자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HACCP 운영중인 오리 도축장으로서 2007년 도축실적이 일정규모(오리 1,500천수/년이상)인 도축장 영업자

### 3. 지원대상

- 오리 도축장 및 가공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용

- 오리고기 가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오리 도축장은 일괄지원 가능

**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**

-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 오리도축·가공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
- 동일업체(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)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

**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**

- 촉발기금(융자) 100%,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1년거치 일시상환

**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**

- 사업계획 검토후 지원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
**마.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**

**1. 사업대상자**

-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

**2. 지원자격 및 요건**

- HACCP 운영중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영업자(업체 및 생산자단체)로서 고품질·위생적인 축산물 및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영업자

**3. 지원대상**

-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용비용

**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**

- HACCP 운용비용, 일반관리비(인건비, 전기료 등) 및 원료구매자금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반 운영자금
- 동일업체(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)에 대한 운영자금중 원료구매자금은 이중지원 불가

**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**

- 촉발기금(융자) 100%, 연리 3~4%(생산자 3%, 일반업체 4%), 1년거치 일시상환

**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**

- 식육포장처리업
- 전년도 지원액,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,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상위등급 도축장에서 작업한 물

- 량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- ※ 지원규모는 원료육 구매실적 50%, 사업신청서상의 원료육 도축장 득점비율 50%를 적용하여 결정

○ 식육가공업

- 전년도 원료육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원

○ 공통사항

-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및 한국육가공협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후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지원(월 원료구매 소요액 기준)
- 2년이상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축산물가공업체는 전년도 지원액의 최대 90%까지 지원(연차적으로 지원 축소)
- ※ 신규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검토후 최대 100%까지 지원

■ 담당과 : (02)500-1921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
(02)500-1911 농림부 축산경영과

② 축산물등급판정지원

**1. 사업개요**

**1. 목적**

- 축산물(소, 돼지 및 닭의 도체와 계란)의 등급 판정을 통해 고품질 축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 등을 유도
-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수 종축개량 및 사양관리기술 연구 방향의 제시
- 품질이 좋은 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품종의 선택, 사양관리의 지표를 제시
- 소와 돼지의 부분육 등급 확인과 닭의 부분육 등급 판정을 통해 축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고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공정한 거래의 실현
- 축산물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소비 촉진
- 축산물의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위한 기준을 제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,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

**2. 근거법령**

- 축산법 제35조(축산물의 등급판정), 제36조(축산물등급판정소)
- 제35조(축산물의 등급판정) 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 및 가축개량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

## + 정책 II

에 관한 등급의 판정(이하 “등급판정”이라 한다)을 받게 할 수 있다.

- 제36조(축산물등급판정소) 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(이하 “등급판정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 ② 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. ③ 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④ 등급판정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축산물 등급판정
2. 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
3. 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
4. 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사의 양성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

- ⑤ 농림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업무 등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,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비·서류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품질이 좋은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
  - 계란 : 2006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3%이상 판정물량의 신장
    - 2013년까지 등급판정 계란 집하장을 36개소로 늘리고, 판정 물량을 전체 계란 생산량의 6%까지 확대(현재 총 42개의 집하장중 19개소, 3%)
  - 닭고기 : 2007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3%이상 판정물량의 신장
    - 2013년까지 등급판정 도축장을 20개소로 늘리고, 판정 물량을 전체 도계량의 10%까지 확대(현재 총 39개의 도계장중 11개소, 1.3%)

성과지표	2008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5	2006	2007		
○ 계란 판정물량 (백만개) [주지표]	224	136	211	217	2009. 1	○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판정 실적 등을 활용
○ 등급판정 계란집하장 수 [부지표]	21	9	14	19	2009. 1	·
○ 닭고기 판정물량 (천수) [주지표]	10,000	11,137	-	7,600	2009. 1	·
○ 닭고기 판정 사업장 수 [부지표]	12	5	-	11	2009. 1	·

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1992~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 이후
합계	117,110	14,214	14,184	16,225	96,200
수수료	17,268	6,470	6,935	7,367	44,000
축발기금	99,842	7,744	7,249	8,858	53,400
○ 세부내역					
- 인건비	-	11,317	11,124	12,320	75,036
- 운영비	-	2,553	2,640	3,237	18,086
- 자산취득비	-	344	420	668	3,078

## II.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 : 축산물등급판정소

### 2. 지원대상 : 축산물등급판정소

### 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소요비용을 축발기금에서 지원
  -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로 사용

### 4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

- 지원형태 : 민간보조
- 축산물등급판정소의 의무
  - 축산법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이 아닌 모든 소, 돼지의 등급판정
  - 업체에서 신청한 닭과 계란의 등급판정 및 쇠고기 부분육 등급 확인
  - 소매단계에서 식육과 계란의 등급별 구분판매 등을 위한 홍보
  - 등급판정 기술 개선 및 등급판정 결과의 피드백
  - 생산능가, 유통업자,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
- 사업비의 지원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내용별	사업량	사업비					
		사업비 합계	예산액(축산발전기금)			지방비	자부담
계	보조		융자				
계		16,225	16,225	8,858	-	-	7,367
등급판정소운영	1개소	16,225	16,225	8,858	-	-	7,367

### 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정액지원 : 등급판정수수료 수입을 초과하는 소요비용 전액 지원

■ 담당과 : (02)500-1917 농림부 축산물위생과

**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**

**I. 사업개요**

**1. 목적**

- 가축 수송과정이 노출됨으로써 오는 혐오감 및 질병전파 위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운송체계 현대화 도모
- 가축 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 하여 축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개방화에 따른 우리축산물의 경쟁력 제고

**2. 근거법령**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3. 성과목표 및 지표**

- 국내 가축수송 현대화로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장차량수송 참여율 제고
  - 현재 특장차량을 이용한 가축수송은 전무한 상태로 2012년까지 특장차량의 가축수송 점유율을 50%까지 확대할 목표임.

성과지표	2008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5	2006	2007		
○ 가축수송 점유율	5%	-	-	-	2월 중	특장차량수송물량 / 연간 도축실적

※ 특장차량 수송물량은 사업완료 후 수송실적기준, 연간도축실적은 축산물위생과 자료기준

**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**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5년까지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이후
합계	-	-	-	6,500	26,000
용자				3,250	13,000
자부담				3,250	13,000
○ 가축수송특장차량				6,500	26,000
- 용자				3,250	13,000
- 자부담				3,250	13,000

**II.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**

**1. 사업대상자**

- 지원 대상자 : 농·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

**2. 지원자격 및 요건**

- 신청자격 :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·축협  
(우선지원 요건)
  - ①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
    - 광역브랜드사업 등 참여 농가의 사육두수가 많은 경영체
  - ② 축산물 공판장(도매시장) 등으로 공동(계통)출하 실적이 많은 농·축협

**3. 지원대상**

-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

**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**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

**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**

- 주요 대상 축종 : 소, 돼지, 닭(축산법에 의한 타 가축도 수송 가능)
- 조건 및 금리 : 축발기금 용자 50%(2년거치 3년상환), 자부담 50%, 연리3%

**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**

-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(냉·난방시설, 급수시설 등)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% 용자
  - ※ 기존(중고)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,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 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,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(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)

■ 담당과 : (02)500-1995 농림부 축산경영과

**축사시설 현대화 사업**

**I. 사업개요**

**1. 목적**

- 한·미 FTA를 비롯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과 DDA

## + 정책 II

협상 재개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 도모

### 2. 근거법령

-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제고),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

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2017년까지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젓소 축종의 축사 총 5,150개소에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도모

구분	성과지표	2008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	2005	2006	2007		
양계	○ 연간회전율(육계)	5.5	6.6	4.8		매년 1월중	연간 출하횟수(양계협회 조사)
오리	○ 연간 회전율	6.1	5.0	5.5		매년 1월중	연간 출하횟수(오리협회 조사)

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5년까지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이후
합계	-	-	-	128,660	1,709,340
보조	-	-	-	25,732	341,868
융자	-	-	-	77,196	1,025,604
자부담	-	-	-	25,732	341,868
○ 한(육)우	-	-	-	34,020	451,980
- 보조	-	-	-	6,804	90,396
- 융자	-	-	-	20,412	271,188
- 자부담	-	-	-	6,804	90,396
○ 양돈	-	-	-	52,500	697,500
- 보조	-	-	-	10,500	139,500
- 융자	-	-	-	31,500	418,500
- 자부담	-	-	-	10,500	139,500
○ 양계	-	-	-	25,200	334,800
- 보조	-	-	-	5,040	66,960
- 융자	-	-	-	15,120	200,880
- 자부담	-	-	-	5,040	66,960
○ 오리	-	-	-	2,940	39,060
- 보조	-	-	-	588	7,812
- 융자	-	-	-	1,764	23,436
- 자부담	-	-	-	588	7,812
○ 낙농	-	-	-	14,000	186,000
- 보조	-	-	-	2,800	37,200
- 융자	-	-	-	8,400	111,600
- 자부담	-	-	-	2,800	37,200

## II.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

- ① 「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」 참여농가(경영체 직영 포함) : 한(육)우 및 양돈에 한함.

- 단, 경영체와 출하약정 계약시점이 2006. 11. 30일 이전이어야 함.

- ※ 「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」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산지 축산물 생산·유통지원 사업중 브랜드사업을 지원받은 경영체를 말함.

②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(계열주체 포함) 또는 전업농 : 한(육)우, 양돈, 양계, 오리, 낙농 대상임.

- ※ 전업농 기준 : 한(육)우 50두 이상, 양돈 1,000두 이상, 양계(닭) 30,000수 이상, 오리 10,000수 이상, 낙농(젓소) 50두 이상

※ 가축계열화 업체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부 고시)에 의해 시·도지사가 지정한 계열화 업체임.

- ※ 종돈장·종계장·종오리장은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2006. 1. 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 제외(축산업 등록제 기준). 다만,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 등은 그 가축사육시설의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### 3.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  - ※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
  - ※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.
  - 양계·오리 : 축사(무창 또는 개방)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·환기 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·습도 조절 장치 등), 폐사축 처리시설
  - \* 착공전 (사)축산물HACCP기준원(<http://www.ihaccp.or.kr>) HACCP기술상담센터(전화 031-443-6160)에 사전 협의를 실시할 것(축종별 HACCP 적용 매뉴얼(지침 및 모델) 등 관련자료 참고).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젓소 축종의 사육

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량

-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 기금
- 보조 20%, 융자 60%(연리 3%, 5년거치 10년상환), 자담 20%
  - 사업자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내에 (사)축산물 HACCP기준원으로부터 HACCP 지정을 받아야 하

며, 미지정시 시·도지사가 자금(융자금) 회수 조치 및 소속 브랜드 경영체의 차년도 지원자금 축소 등 패널티 부과(오리는 HACCP 기준 설정 후부터 적용)

- 시·도지사는 자금회수 조치후 그 결과를 우리부에 보고
- 사업기간 : 1~2년(사업계획에 의한)

〈2008년도 예산안 내용〉

구분	사업량(개소)	단가	사업비					
			사업비합계	예산액			지방비(-)	자부담(20%)
				계(100%)	보조(20%)	융자(60%)		
계	515	-	128,660	102,928	25,732	77,196	-	25,732
1. 한육우	200	243	34,020	27,216	6,804	20,412	-	6,804
2. 양돈	150	500	52,500	42,000	10,500	31,500	-	10,500
3. 양계	75	480	25,200	20,160	5,040	15,120	-	5,040
4. 오리	10	420	2,940	2,352	588	1,764	-	588
5. 낙농	80	250	14,000	11,200	2,800	8,400	-	2,800

※ 주) 예산액은 1년차 사업률 70% 적용

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가축사육시설 면적(㎡) 및 개소당 등 지원한도액
  - ※ 아래표의 지원한도액은 보조 및 융자 합산액을 말하며, 지원조건 비율(보조 20%, 융자 60%, 자담 20%)을 준수하여야 함.

구분	가축사육시설 면적당(㎡) 지원한도액	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	개소당 지원한도액
양계	산란계 476천원/㎡	20백만원	1,400백만원
	육계 304천원/㎡	20백만원	700백만원
오리	102천원/㎡	20백만원	700백만원

※ 주)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의 지원대상은 축사 및 내부기자재임  
 ※ 주2)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,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

■ 담당과 : (02)500-1907 농림부 축산경영과

##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

### I. 사업개요

#### 1. 목적

- 종축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축폐사 감소 등 생산성 향상 도모
- DDA, FTA 협상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, 동물복지 등 국제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추진

### 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정책의 강구) :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공급,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종돈 및 종계장 시설개선을 통해 우량 종축생산 등 생산성 향상
  - 2013년까지 돼지·닭 개량성적을 2002년 대비 최고 20%까지 향상
  - 돼지·닭 검정참여율을 최고 60%수준 향상
  - 종오리(GPS)시설을 2개소 설치하여 우량오리 보급 기반 마련

성과지표	2008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5	2006	2007		
○ 닭검정참여율(%)	61	67	46	61	익년도 2월	산란종계 검정대상 계군수 대비 산란종계검정실적 계군수 비율
○ 종오리(GPS)시설 설치	1	-	-	-		당해년도 종오리(GPS)시설 지원 개소수

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5년까지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이후
합계	-	-	-	13,692	
융자	-	-	-	8,492	
자부담	-	-	-	5,200	
○ 종돈(합계)				657	
- 융자				407	
- 자부담				250	
○ 종계(합계)				9,875	
- 융자				6,125	
- 자부담				3,750	
○ 종오리(합계)				3,160	
- 융자				1,960	
- 자부담				1,200	

※ 주) 예산액은 1년차에 사업률 70% 적용

### II.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# 1. 사업대상자

- 종돈·종계·종오리 사육농가



## + 정책 II

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종돈·종계 : 종축업으로 시·군에 등록된 농가
  - ※ 우선순위 : 3년간 검정실적(사육두수 대비 검정실적)이 많은 종축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
- 종오리 : 원종오리(GPS)와 종오리(GP)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농장
  - ※ 원종오리(수출국 확인)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참여 희망자

### 3. 지원내용

- 종계·종오리 : 축사 및 내부시설

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종계·종오리의 축사 및 내부시설은 바닥재, 칸막이, 급수, 소독·환기시설, 온·습도 조절 등이며, 종오리의 경우 부화장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됨.
  - ※ 기존 사육두수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에 한해서 지원(사육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 축사시설 지원은 제외)

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재원 : 축산발전기금
- 지원조건 : 융자 70%, 자담 30%(연리 3%, 5년 거치 10년 상환)
- 사업비를 지원받는 종돈업, 종계업 농가는 연간 일정두수(수수)를 검정기관의 검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함.

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지원한도액(개소당) : 종돈 83백만원, 종계 2,500백만원, 종오리 4,000백만원
  - 2008년 지원 개소수 : 종돈 10개소, 종계 5개소, 종오리 1개소

- 담당과 : (02)500-1894 농림부 축산정책과

##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

### ① 가축계열화사업

#### I. 사업개요

##### 1. 목적

-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경영으로 양축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

과 품질향상 등 안정적인 축산경영도모

#### 2. 근거법령

- 축산법 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 ① 농림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, 사료의 안정적 공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국내 축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 가축계열화 참여율 제고
  - 2006년 현재 양돈 16%, 양계 72%인 가축계열화 참여율을 2005~2007년 참여율 증감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양돈 36%, 양계 83%까지 확대

성과지표	2008 목표치	최근 3개년 실적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2005	2006	2007		
○ 가축계열화율						
- 양돈	20	15	16	18	2009. 2	가축계열화사업자 도축두수/총 도축두수×100
- 양계	74	71	72	73		

#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05년까지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이후
합계	242,937	10,751	26,000	26,000	360,000
융자	242,937	10,751	26,000	26,000	360,000
○ 양돈	111,080	2,668	15,896	13,000	180,000
○ 양계	131,857	8,083	10,104	13,000	180,000

## II. 200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# 1. 사업대상자

- 가축계열화 사업자(계열화 참여능가는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원가능)

##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(농림부고시 제 2003-10)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
- 제한사항
  - 닭·오리 신청업체 또는 생산시설이 없는 유통업체의 경우 2년이상 자체 계열화 사업실적(사업신청 직전년도 계약생산 실적이 돼지는 30천두, 닭은 500천수, 오리는 200천수 이상)이 있어야 한다.
  - 계열참여 농가는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

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-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 등)은 농림사업실 시규정 별표 3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브랜드육성사업 등 타사업을 통해 경영자금 등 사육비와 동일한 성격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환완료시까지 계열화사육비 지원불가(단, 시설비는 지원가능)

○ 우선지원 요건

- 완전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물종합처리장 및 동 처리장과 연계하여 계열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자
- 축산단지 등 기존시설과 연계·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자
- 도축장, 사료공장, 종돈장, 육가공장 및 유통판매 시설중 2종 이상을 보유한 계열주체
- 계열화사업을 지정한 자로서 재해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

3. 지원대상

○ 돼지, 닭(육계, 산란계), 오리를 대상으로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계열사업

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완전, 부분계열화 및 조합형계열화 등 계열화에 필요한

생산기반·사육시설, 가공시설, 유통시설·장비, 계열화사육비 등 별표 1에 명시된 지원대상

5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기금융자율·자부담율, 용자기간, 금리 등은 별표 1(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) 참조
- 사업추진 기간내에 『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의 사업추진규모』에 부합하는 아래 사항을 확보해야 함.
  - 닭·오리 :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병아리·새끼오리를 생산·공급할 수 있는 종계장·종오리장과 부화장(계약공급의 경우 3년이상 장기계약을 하여야 함)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아래 사업추진규모 이상의 계열화규모 확보에 소요되는 적정자금으로 명시적 한도제한은 없음
- 사업추진규모
  - 닭(육계) : 연간 육계 생산·처리능력 4,000천수(농가는 25호) 이상
  - 닭(산란계) : 연간 계란 생산·처리능력 150백만개(농가는 25호) 이상
  - 오리 : 연간 오리 생산·처리능력 1,000천수(농가는 15호) 이상

〈별표 1〉 가축계열화사업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

구분	지원범위	지원조건	비고
1. 계열주체사육 시설	○ 계열주체가 직영하는 생산기반시설 및 사육시설 - 사무실, 관리사는 자담으로 추진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	
2. 계열농가생산 시설	○축 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	- 사업비의 70%이내 - 연 3%(변동이 있을 수 있음)	지원조건은 농업종합자금지원사업과 동일
3. 가공시설(육가공 공장, 난가공장, 계란집하장 등)	○「도축·가공업체 시설 및 운영지원」사업과 동일	- 사업비의 70% 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3년거치 7년균분 상환	
4. 유통시설	○유통에 필요한 판매장·시설·장비 등	-	
5. 계열화사육비	○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○자축구입비, 사료비, 약품비, 위탁사육수수료 등	- 총사업비의 50%이내 - 연리 4%(농·축협 등 생산자단체 3%) *금리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- 2년이내 상환	

\* 사료제조시설, 상기 지원내용이외 기타시설 및 재료비는 자부담으로 추진

■ 담당과 : (02)500-1907 농림부 축산경영과

- '축산물 안정성 검사 및 경영안정' 부터는 다음호에 계속...